

마이넘버의 제공을 요구받는 주요한 경우(2016년 1월 18일 현재)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이나 세금의 행정사무에 이용하기 위해 근무처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마이넘버의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 번호 카드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또한 아래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전화로 마이넘버의 제공을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마이넘버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행정기관과 민간사업자의 데이터베이스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일도 없습니다.

※마이넘버 제도의 도입 후에도 행정기관이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종류는 현행대로 법령에 근거하는 것에 국한되며, 행정기관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을 요구하는 자 (※대리인 또는 위탁을 받은 자도 포함)	제공해야 하는 자
근무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여, 퇴직금 등을 받을 분 •후생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의 자격을 취득하실 분 •국민연금의 제3호 피보험자(종업원의 배우자) 등
계약처 (계약기업, 강연 등의 주최 기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 요금, 계약금을 받을 분 등 (사례: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과 같이 사(士)자가 붙는 직업, 외판원, 수금원, 보험대리인, 마주, 프로스포츠 선수, 술집 여종업원 등에 대한 보수, 사회보험 진료보수 지불기금이 지불하는 진료보수, 원고료, 강연료, 그림값 등)
부동산 업자 등 (부동산 중개료, 부동산 사용료(집세)를 지불하는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업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연간 100만 엔 이상의 부동산 양도의 대가 또는 연간 15만 엔 이상의 부동산 중개료 또는 부동산 사용료(집세)를 받으실 분
금융기관 등 (은행, 증권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선물거래업자, 금지금 판매회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에서 주식, 투자신탁, 공사채 등의 증권거래를 하고 계신 분 (※2018년 이후, 예저금 구좌에 부번을 시작할 예정. 단, 번호의 제공은 임의.) (※기존 구좌에서 하는 증권 거래에 대해서는 2016년 이후 3년간 유예 기간 있음.) •비과세 적용의 예저금·재형 저축을 하고 계신 분 •국외송금 또는 국외로부터의 송금을 수련하실 분 •생명보험 계약·손해보험 계약(지불액이 100만 엔 이상의 사망보험, 연간 지불액이 20만 엔 이상의 연금보험, 지불액이 100만 엔 이상의 일시불특약·만기반환금특약 등), 또는 공제 계약을 하고 계신 분 •선물거래(FX거래 등)를 하고 계신 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계신 분 •1회에 200만 엔 이상의 금의 지금을 매각하실 분 •비상장주의 배당을 받을 주주 등
세무서,일본연금기구(※),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 노동기준감독서, 도도부현, 시정촌, 전국건강보험협회, 건강보험조합 ※ 일본연금기구의 마이넘버 이용 시작은 당분간 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 세금, 재해대책에 관한 행정수속을 할 분 (사례:생활보호, 고용보험의 신청, 건강보험급부의 신청, 2016년분 이후의 세금 확정신고 등)